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 서 울 고 등 법 원

## 제 8 행 정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18누375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
| 피고, 피항소인 | [redacted]광역시 B구청장 |
| 제 1 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구합5162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6. 29. |
| 판 결 선 고 | 2018. 8. 24. |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2행의 "전부개정"을 "개정"으로 고친다.

○ 3면 1, 2행의 "이를 전제제로"를 "이를 전제로"로 고친다.

○ 3면 12행의 "2017. 1. 26."을 "2017. 1. 25."로 고친다.

○ 3면 14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4면 각주 1행의 "제1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으로 고친다.

○ 5면 11행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으로 고친다.

○ 6면 7행의 "제13조 제2항 제2호"를 "제13조 제2항 제1호"로 고친다.

○ 7면 6행의 "을 제6호증의 기재"를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7면 15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6. 1. 29. 지점을 설치하고서 약 4개월 정도가 지난 2016. 5. 3.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연접한 토지로서 대도시 지역에 속하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원고는 호텔건물인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 부분과 연결되는 건물을 신축할 계획 등에 따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그 지점과 관계되어 대도시에 소재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또는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에 상관없이 그 취득에 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참조,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원고가 설치한 지점의』

○ 8면 20행의 "개정"을 "전부개정"으로 고친다.

○ 10면 18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11면 13행, 13면 19행 및 16면 5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13면 15행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취득세 신고"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로 고친다.

○ 14면 17, 18행의 "자료 송부 없이 이루어진 상당히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여"를 "자료 송부 없이 함으로써"로 고친다.

○ 15면 4행의 "설령 E"를 "E"로 고친다.

○ 15면 5행의 "그러한"을 "설령 그러한"으로 고친다.

○ 15면 17행의 "추상적인 수준"을 "추상적인 전화 문의"로 고친다.

○ 16면 10행의 "그와 관한 검토"를 "그에 관한 검토"로 고친다.

○ 16면 13행의 "학인"을 "확인"으로 고친다.

○ 16면 19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 17면 4행의 "아닌 것으로보"를 "아닌 것으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신숙희

판사 이승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 1.목록

| 과세물건 | 구분 | 합계(원) | 본세(원) | 가산세(원) | |
|---|---|---|---|---|---|
| | | | | 과소신고 | 납부불성실 |
| 별지 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 취득세 | 467,043,200 | 412,000,000 | 41,200,000 | 13,843,200 |
| | 지방교육세 | 85,168,640 | 82,400,000 | | 2,768,640 |
| 별지 2.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 취득세 | 28,143,360 | 25,200,000 | 2,520,000 | 423,360 |
| | 지방교육세 | 5,124,670 | 5,040,000 | | 84,67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 2.목록

1. [redacted] H 및 I 합계 1,473.8㎡ 및 그 지상건물 4,982.231㎡
2. [redacted] L 및 M 합계 297㎡. 끝.